

[통합기본서 제 5 판 사용자를 위한 추록]

상표법 통합기본서 제 6 판이 출간됨에 따라, 상표법 통합기본서 제 5 판에 사용자를 위한 추록입니다.

제 6 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6 판에는 최신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제 6 판에는 법리에 대한 “예시”를 다량 삽입함으로써, 상표법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6 판에서는 5 판에서 발견된 오기, 오타를 수정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제 6 판은 제 5 판과 달리 “예시”를 다량 추가하였습니다. 본 추록에서는 이와 같은 예시는 생략하고, 상표법상 “내용”의 추가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변리사

상표법 무료강의 안내

2024년 상표법 **1차 기본강의 수강생분들께는** 아래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아래강의 중 2차 강의는 2024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구분	강의명	개강예정
1차	1차 상표법 OX 강의	23년 6월
	1차 상표법 기출강의 (22개년 진도별 기출풀이)	23년 7월
2차	2차 상표법 기본강의	24년 3월
	2차 기초GS	24년 3월

상표법 1차 기본강의가 포함된 각종 패키지에도 위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상표법 1차 기본강의가 포함된 패키지 List는 아래와 같습니다.

패키지 종류	특이사항
상표법 T-pass	선착순 20% 할인 중
기본강의 패키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특상디)	
Full 패키지 (민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Full 패키지 (특상디)	인강 무제한 수강 선착순 20% 할인 중

P. 19 추가

(7) 기타에 추가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判例).

P. 68 추가

(9) 타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판례 추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당해 상표사용행위가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상표는 본호를 적용한다(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138).

상표(지정상품)	판단내용
 (외과수술용 이식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약사법에 의해 판매가 허용됨에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함 * "HYLAFORM"은 피부주름제거제

P. 73 추가

3. 관련문제

(1) 부분거절제도와 관계

부분거절결정시 일부 지정상품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부분거절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그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취소·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와 출원인을 일치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거절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가 아니다.

P. 74 추가

3. 관련문제

(1) 선출원 등록상표 vs 후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선출원 등록상표 (지정상품 : 사과) 대물림 대구사과	후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정상품 : 사과) 대구사과
--	--

후출원된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등록권리가 일반상표이므로, 후출원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일반상표가 선등록상표이고, 해당 지리적 명칭이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선등록 일반상표가 있어도 그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다.

(2)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vs 후출원 상표

선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정상품 : 사과) 영주사과 (지정상품 : 사과)	후출원 상표 (지정상품 : 사과)  (지정상품 : 사과)
---	---

후출원된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등록권리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므로, 후출원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는 식별력(지리적 출처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사례의 경우 영주는 사과에 대해서 지리적출처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일부가 되어, 양 상표는 전체로서 유사하다. 따라서 후출원 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P.79 추가

3. 관련문제

(1)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목 등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로서 방송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적용이 가능하다.

P.80 추가

3. 관련문제

(1)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목 등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들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상표로서 방송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 영업상 혼동(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적용이 가능하다.

P.84 추가

5) 국가(도시)명과 연도표시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국가(도시)명과 연도표시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부터 그 국가(도시)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본 호를 적용한다.

[예시]

• ENGLAND 1955 • ITALY SINCE 1955 • MILANO 1955

6) 지정상품이 해당 국가(도시)에서 유명하고, 상표에 해당 국가(도시)명이 포함될 경우

지정상품이 해당 국가(도시)에서 유명하고, 상표에 해당 국가(도시)명이 포함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유명성 때문에 상품에 유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국가(도시)명이 산지 또는 판매지 등으로 인식되는 상표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도시)명이 산지 또는 판매지 등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국가(도시)명의 양질감을 차용하기 위한 용도로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예시]

상표	지정상품
통영 굴사랑	신선한 굴
금홍 금산인삼	인삼

[부적용 예시]

상표	지정상품
MIRACLE NEWYORK	의류

P.92 추가

2. 판단방법

가. 본호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 확보에 본질적이거나 품질·가격에 경쟁상 기술적 우위를 부여하기 위한 특성(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 만으로 된 표장에 적용한다.

나.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i) 기능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ii)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iii) 품질·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구분	기능수행에 있어본질적인 경우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예시	 컵의 오목한 형상 (액체를 담는 데에 필수적)	 양식당의 포크·나이프 (음식을 먹는 데에 필수적)	 캔의 오목한 바닥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여 품질 개선)

다. 한편 심사기준은 “기능성은 입체적 형상 등의 전체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능성이 없는 일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상기 심사기준은 제34조 제1항 제15호가 “만”으로 된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P.111 가

3. 관련문제

(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25조)

① 의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 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대상

상표등록출원서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 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반려의 대상으로 한다.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 <개정 2018. 10. 17, 2023. 2. 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6의2. 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8. 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1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인 경우
 15.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 등이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 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변경신청서, 철회서)
 - 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17.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7, 2023. 2.
- 1.>
1.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2. 반려이유
 3. 소명기간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요청을 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⑥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123 추가

- ②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제41조 보정)에 추가

※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2항·제3항 및 제210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P.123 추가

- (2) 보정의 효과 2) 부적법 ② 내용 위반의 경우(제42조)

가. 나.

다. 심사관은 ~ 중지하여야 한다(제42조 제3항).

[제123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 한 경우”는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P. 125 정정 3) 라. i) ii)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의 상표 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체상표 5장 이하, 홀로그램 또는 동작상표 2장 이상 5장 이하, 기타 시각적 상표 5장 이하 의 상표 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

P. 133 추가

2. 유형

(1) 전부우선권(total priorities)

우리나라에 출원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을 말하는 것으로 대 부분의 우선권주장은 여기에 해당한다.

(2) 부분우선권(partial priorities)

(3) 복합우선권(multiple priorities)

P. 134 추가

3. 요건 / (2) 제2국 출원 / 가.

[출원인에 따른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동일인 여부의 판단은 출원시가 아니라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출원인에 따른 우선권주장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중간에 B라는 명의로 변경한 후 한국에 B라는 명의로 출원하면 우선권주장 인정

2.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중간에 B라는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한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하면 우선권주장 불인정

3. 최초 출원국에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하고 한국에 B라는 명의로 출원하면서 한국에서는 우 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양도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인정

P.135 정정

6. 쟁점

(1)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1) 우선권 주장을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변경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을 수반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 선권 주장이 간주되고 증명서류 제출이 간주된다(제45조 제3항 및 제4항).

② 변경출원의 경우

가.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을 수반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변경출원은 분할출원과 달리 우선권주장 간주 및 증명서류 제출간주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변경출원에서 우선권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편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요건(제46조 제2항)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제45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서 우선권주장 취지의 기재 및 증명서류의 제출요건(제46조 제3항 및 제4항)은 변경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제45조 제2항 단서, 심사기준).

2)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출원을 분할 또는 변경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요건(제46조 제2항) 우선권주장 취지의 기재 및 증명서류의 제출요건(제46 조 제3항 및 제4항)은 변경 또는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심사기준).

P.140 추가

3. 관련문제

(2) 출원공개제도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고(특허법 제64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출원공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상표법은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출원공고제도를 두고 있다(상표법 제57조).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인 반면에 출원공개는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제12-1장 추가 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볼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도입의 취지

가. 종전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되었다(출원일체의 원칙).

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만이라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관은 출원한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거절결정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통지 및 부분거절결정

가.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부분거절되나,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 상품은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출원공고 하여 최종 등록됨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나. 심사관은 의견서, 보정서 제출 등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4조). 거절결정서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야 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등록될 예정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출원인은 부분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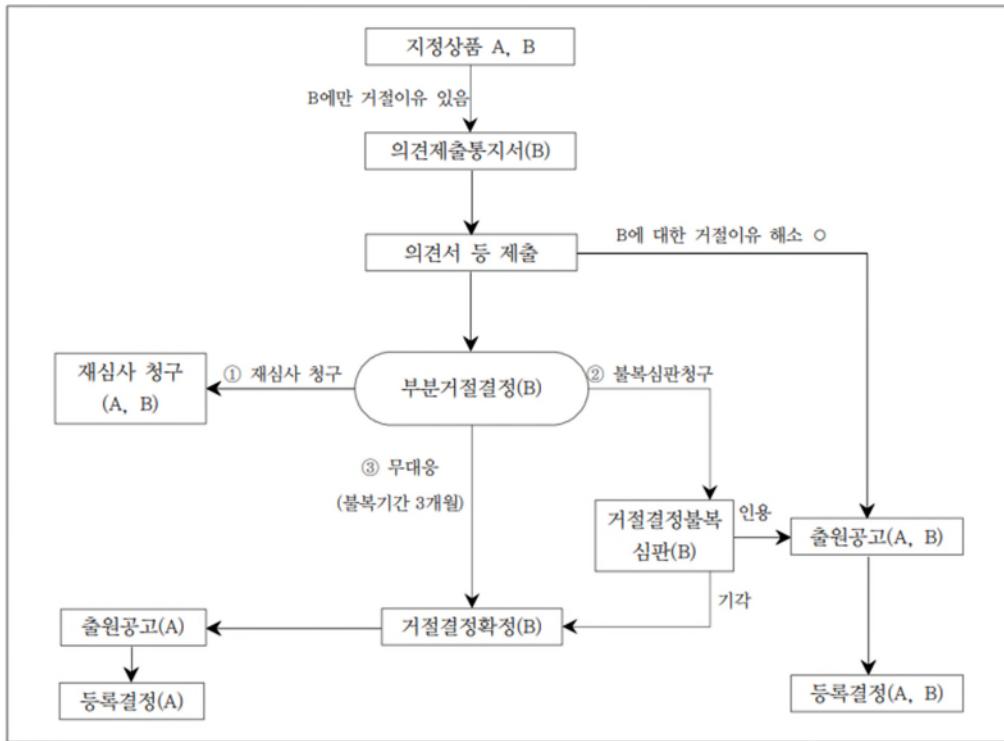
라. 출원인은 부분거절결정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보정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제40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단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5조의2).

3.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결정

가. 심사관은 부분거절결정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한다. 부분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7조 제1항).

나. 부분거절결정서를 발송한 이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운 거절이 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직전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의견제출통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부분거절결정을 한다.

[부분거절결정 절차도]



P. 153 정정

제79조 제3항 정정

3년 -> 5년

P. 160 추가

6. 관련문제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취하(제13조)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할 수도 있고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나.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P. 186 정정

2. 요건

(2) 2)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判例)

① 일반적인 경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라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P. 261 정정

(3) 2) 타인의 상품과 혼동

바. 상표권자가 -> 사용권자가

P. 262 정정

(3) 2)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

다. 상표권자가 -> 사용권자가

P. 327

15-1 재심사 청구의 특례(제193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 336 정정 3. 출원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37 정정 (4) 요지변경. 나.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46 정정 4. 출원

정정 전	정정 후
<u>2장 이상 5장 이하</u>	5장 이하

P. 380

(4)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배제 규정

사용 또는 ~ 부여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20호, 제21호).

P. 384 정정(가목 ~ 차목은 유지, 카목부터 아래와 같이 정정됩니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종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P. 385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제2조 제1호 카목】 보충적 일반조항	【제2조 제1호 파목】 보충적 일반조항

P. 387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 목과 동시적용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 목과 동시적용 여부